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남인순의원 · 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10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김대식 · 주진우
김기현 · 강승규 · 허종식
백종헌 · 조승래 · 조정식
이정문 · 김영호 · 이재강
박수영 · 곽규택 · 정을호
고민정 · 진선미 · 김원이
조정훈 · 김 윤 · 김용태
오세희 · 채현일 · 배현진
이기현 · 박정현 · 한창민
고동진 · 박성민 · 조경태
정연욱 · 박성훈 · 조계원
의원(3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,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.

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 · 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,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

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·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·체계성을 강화하고,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3).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3의 제목 중 “의료인”을 “의료인·의료기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의료인을”을 “의료인 및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학과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적용하되,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학과에 지정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의3(<u>의료인</u>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 한 특례)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의료법」 제2조제1 항에 따른 <u>의료인</u> 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.	제50조의3(<u>의료인 · 의료기사</u> 양 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<u>의료인 및</u> <u>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</u> <u>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</u> <u>물리치료사를</u> ----- ----- ----- 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